

1

2021

월간

#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중국 동물방역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1  
소비자물가 13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4  
대 세계 식량 수출입 16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9

## 농정 이슈

### ◆ 중국 동물방역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sup>1)</sup>

- 주재국은 2021.1.22(금)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주석령 제69호)의 전문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 바, 동 법 개정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알림

#### 1. 개정 배경

- 2018년 당시 전인대 농업위원회는 동물방역법 실시상황에 대한 법집행 조사연구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
  - 동물전염병 병종(病種)이 많고, 전염원이 복잡, 인수공통전염병 위험 존재, 무역과 교류 증가로 국외 전염병 유입위험 증가, 동물방역은 아직도 제도적 결함존재
  - 기존 동물방역법은 2008년부터 개정시행, 중국 사육업의 생산안전과 공중위생안전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
- 전인대 농업위원회는 2년 남짓한 동안의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의견을 널리 청취한 끝에 2019년 개정초안을 만들어 농업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
- 전인대 농업위는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 시 주석의 입법 보완요구와 야생동물의 금식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 정신을 근거로, 국무원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방역법 개정안을 추가 수정하여, 2019년 4월 전인대 상무위 17차 회의에 심의 요청

1) 이 자료는 주중한국대사관 우만수 농무관이 작성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주석령 제69호)》은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개정되어 통과하여 공포(2021년 5월1일부터 시행)

## 2. 주요 개정내용

- (동물방역 방침 완비) 동물 방역의 자체 법칙에 근거하고, 국제 선진 방법을 참고하여, 예방 위주의 기초 위에 정화, 소멸 방침 등을 추가함.
  - 국가는 사회적 역량이 동물방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각급 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동물방역의 홍보교육, 전염병상황보고, 자원봉사와 기부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동물방역에 진료, 정화, 소멸과 병들어 죽은 동물, 병해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동물 방역 관리 사슬을 완전히 보완함.
  - 인수공통전염병 목록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건강, 야생 동물보호 등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함.
- (방역책임 체계 완비) 생산경영주체가 부담하는 동물방역 관련책임을 명확히하고 관리부서 감독관리 책임과 지방정부 책임, 속지화 관리책임을 강화함.
  - 동물의 사육, 도축,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등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면역, 소독, 검측, 격리, 정화, 소멸, 무해화 처리 등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하며, 동물방역 관련 책임을 짐.
  - 관련 부서의 야생동물, 실험동물, 출입국 동물·동물제품 방역감독 관리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함.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동물위생감독기구는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업무를 책임지며,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함.
  - 동물전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전염병의 관측, 검측, 진단, 역학조사, 전염병발생상황 보고와 기타 예방, 통제 등 기술업무를 책임지고, 동물전염병의 정화, 소멸의 기술업무를 담당함.
  - 현급이상 위생건강, 농업농촌, 야생동물보호 주관부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국무원(농업농촌)과 세관총서 등 부서는 국경 밖 동물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방역제도체계 완비) 동물방역 전과정 관리를 감안, 위험평가, 강제면역, 모니터링 예방경보, 지역화 관리, 동물방역 조건심사, 동물 검역 등 제도를 조정·강화함
- (위험평가)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는 국내외 동물전염병의 발생 상황 및 사육업 생산과 인체건강을 보호하는 수요에 근거하여 적시에 국무원 위생건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동물전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동물전염병의 예방, 통제, 정화, 소멸 조치와 기술규범을 제정, 공포함.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서는 해당급 인민정부 위생건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구역의 동물전염병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동물전염병의 예방, 통제, 정화, 소멸 조치를 시행함.
  - (강제면역) 국가는 사육업 생산과 인체건강에 엄중한 해를 끼치는 동물전염병에 대하여 강제면역을 실시하며,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는 강제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전염병의 병종과 구역을 확정함.
    -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전염병의 강제면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강제면역계획과 기술규범에 따라 동물에게 면역접종을 실시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가축 표식을 부착하여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강제면역 접종을 한 동물이 면역 품질 요구에 미달하여, 보충 면역접종을 실시한 후에도 여전히 면역 품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품질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현급이상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동물전염병 강제면역 계획의 실행을 책임지며, 동물사육 단위와 개인의 강제면역 의무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함.
  - 현급이상 지방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강제면역계획의 실시상황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포해야 함.
- (모니터링) 국경지역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동물전염병 모니터링 관측소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모니터링업무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국경 밖 동물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함.
- 과학기술부, 세관 등 부서는 이 법과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동물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농업농촌 주관부서와 교신을 하여 긴급한 상황을 적시에 통보
  - 현급이상 정부는 야생동물 전염병원인의 모니터링 체계와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요에 따라 감시측정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야생동물 보호, 농업농촌 담당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야생동물 전염병 발생 전염병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교신을 하며, 긴급상황은 적시에 통보
- (격리구역 건설) 국가는 지방에서 무규정 동물전염병 발생구역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동물사육장이 무규정 동물전염병 생물 안전격리구역을 건설하는 것을 권장함.
-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행정구역 내의 무규정 동물전염병구역 건설방안을 제정 및 실시하며,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간의 무규정 동물전염병 구역 건설을 지도함.
  -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행정구획, 사육, 도축 산업분포, 위험평가 상황 등에 따라 동물전염병의 구역을 나누어 예방통제를 하는 한편 특정 동물, 동물제품의 지역 간 운송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화소멸) 국무원(농업농촌)은 동물전염병 정화 및 소멸계획을 제정하고, 현급이상 정부는 동물전염병 정화 및 소멸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전염병 정화 및 소멸계획을 제정·실시함.
- 동물전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전염병 정화 및 소멸계획, 계획에 따른 동물전염병 정화 기술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전개하고, 동물전염병 정화 효과에 대한 검측, 평가를 진행함.
  - 국가는 동물전염병의 정화를 추진하고 동물사육 단위와 개인이 동물전염병의 정화를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농업농촌)의 정화표준에 도달

한 경우, 성급 이상 정부는 이를 공포함.

- (무해화 처리장소) 동물사육장과 격리장소, 동물도축가공장 및 동물과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장소는 다음 각호의 동물방역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장소와 주민 생활 구역, 생활 음용수 수원지,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와의 거리는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경영구역은 봉쇄 격리하고 공사설계와 관련된 과정이 동물방역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규모에 상응하는 처리시설, 병들어 죽은 동물, 병든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시설 설비 또는 냉장 냉동 시설 및 세척, 소독 시설이 있어야 함.
  - 규모에 상응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방역 기술 인원이 있어야 하며, 격리소독, 구매와 판매 대장, 일상 순찰과 같은 완벽한 동물방역제도가 있어야 함.
  - 무해화 처리장소는 병원성 검사설비, 검사능력 및 동물방역 요구에 부합되는 전용 운송 차량을 갖추어야 함.
  - 동물전염병 정화·소멸, 지역별 예방통제, 운송 주체 및 차량 등록, 지정 통로 및 병들어 죽은 동물, 병해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 등의 제도 규정을 신설하여 생산경영 각 단계에 대한 동물방역 활동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공중 위생보장 완비)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사육견 방역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광견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업무를 더욱 강화함.
- (개 고양이 방역) 단위와 개인이 개를 사육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동물진료기구가 발급한 면역증명서에 근거하여 소재지 개 등록기구에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주민센터, 향급 정부는 주민위원회와 촌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협조하여, 본 관할구 떠돌이 개와 고양이의 통제 및 처치로 유행성 전염병을 예방함.
- (전염병 발생상황) 현급 이상 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확정하며, 중대한 전염병의 발생 확산상황은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 농업농촌주관부서에서 인정하고 필요시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확정을 받아야 함.
  - 중대 전염병 발생 상황이라 함은 제1류, 제2류, 제3류 동물전염병이 갑자기 발생, 신속하게 전파되어 사육업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거나 대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임.

- 중대 동물전염병의 발생 상황 보고 기간, 필요 시,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봉쇄 결정을 내리고 살처분,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관은 수출입하는 동물과 동물제품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시에 처치하고 농업농촌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함.
- 인수공통전염병 상황 발생 시 현급 이상 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와 해당급 정부 위생건강, 야생동물보호 등 주관부서는 적시에 상호 통보해야 함.

□ (수의사 관리제도 완비) 전문적으로 정부 수의사 임명제도를 시행하고, 해관의 정부수의사 관리를 규범화하며, 개업 수의사의 응시 규정을 조정하였음.

- 정부수의사는 국무원(농업농촌)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소재지 현급 이상 정부가 임명함.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제정함.
- 해관의 정부수의사는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관총서가 임명함.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함.
- 현급 이상 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정부수의사 훈련계획을 제정하고 훈련조건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수의사를 양성, 심사함.
- 개업수의사는 수의사 처방을 직접 진단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향촌수의사는 농촌에서 동물 진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제정함.
  - 개업수의사, 향촌수의사는 소재지 인민정부와 농업농촌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동물전염병의 예방·통제와 동물전염병의 박멸 등 활동에 참가해야 함.
  - 국가는 개업수의사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개업 수의사가 속한 기구는 해당 수의사가 계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의사협회는 수의사 정보, 기술,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정관에 따라 업종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구축, 정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

하여, 업계의 신의성실 건설을 추진하며, 동물방역과 수의사 지식을 홍보함.

□ (방역 체계건설 완비) 동물위생 감독관리기구와 동물전염병 예방 통제기구의 법정 기능을 조정하고 완벽하게 하여 동물방역제도 규정을 구체화하였음.

- 국무원(농업농촌)은 동물전염병의 성격, 특징 및 발생 가능한 사회 위해성에 근거하여 중대한 동물전염병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동물전염병의 종류별, 유행의 특징과 위해 정도에 따라 실시방안을 제정함.
-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상급 중대한 동물전염병 발생상황 응급예비안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중대한 동물전염병 발생 상황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이를 직상급 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서에 등록하며 이를 직상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송달함.
  -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서는 동물전염병의 종류와 유행 특징, 위해 정도에 따라 각기 실시방안을 제정함.
- 중대한 동물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서는 동물전염병 위험구역 확정을 책임지고, 특정 동물, 동물제품이 고위험 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함.
- 중대한 동물전염병 응급예비안과 실시방안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함.

□ (방역 보장조치 완비) 동물방역에 대한 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강제로 살처분한 동물, 소각한 동물제품과 관련 물품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함.

- 국가는 동물방역 분야의 신기술, 신설비, 신제품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급 인민정부는 동물위생감독기구에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업무에 적합한 정부수 의사를 배치하고 검역사업 조건을 보장해야 함.



- 국가는 개업수의사, 향촌수의사와 동물진료기구가 동물방역 및 전염병 진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육기업,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생산기업이 동물방역 봉사단을 구성하여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 지방정부는 촌급 방역원을 조직하여 동물전염병 예방 및 퇴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촌급 방역원의 합리적인 노무 보수를 보장해야 함.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급 정부의 직책에 따라 동물전염병의 모니터링, 예방, 통제, 정화, 소멸,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과 병들어 죽은 동물의 무해화 처리 및 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급 예산에 포함해야 함.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전염병의 예방, 통제, 정화, 소멸 과정에서 강제로 살처분한 동물, 소각한 동물제품과 관련 물품에 대하여 보상을 함.
  - 동물전염병 예방, 검역, 감독 검사, 현장 처리 및 업무 중 동물전염병 병원체에 접촉한 인원에 대하여 관련 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위생방호와 의료보건 조치를 취하고 축산수의의료위생수당 등 관련 대우를 제공함.
- (법률 책임설정 완비) 법률 제도의 조정과 설정에 따라 의무적이고 금지적인 조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업종의 진입금지 등 처벌조치를 강화하였음.
-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보고를 받은 후, 적시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비평, 법적 처분)
  - 사육하는 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 면역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기한 내)
  - 규정을 위반한 동물, 동물제품의 운송 수단, 깔개, 포장물, 용기 등이 국무원(농업농촌)이 정한 동물방역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된 인원이 모니터링, 검측, 검사검역, 동물 진료 및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사육, 도축, 경영, 격리, 운송 등 활동에 직접 종사하

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3. 주요 의미와 시사점

- (개정 의의) 중국 정부는 금번 법률적 보완을 통해 △ 동물방역, △ 축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 공중위생 안전을 공고히 하고 인민대중의 건강 보장 등에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힘.
  - 동물전염병은 축산업 발전에 해를 끼치는 가축의 폐사 및 생산 효익 저하로 안정적이고 고품질 축산물공급과 좋은 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불리함.
  - 동물전염병 통제 강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완벽한 법률 체계 구축을 위해 '두 개의 조정'과 '부족 부분 보완'을 함.
    - ※ 두개의 조정: △ 동물방역 방침은 '예방 위주' 에서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 정확, 소멸의 결합' 으로 조정, △ 동물방역의 책임은 정부 수의기구가 주로 담당하던 것을 책임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조정
    - ※ 부족 부분 보완: 본래 △ 부족했던 제도(무해화처리, 수의사 관리, 정확·소멸계획), △ 완벽하지 않은 제도(인수공통전염병 예방통제, 야생동물 검역, 질병발생 모니터링 경보, 동물과 동물 제품의 위생방역 안전 추적), △ 취약한 부분(말단 동물방역 체계 강화, 법적 책임 강화, 공중위생 보장제도 강화)의 보완
- (입법목적 확대) 입법목적에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 통제하며", "공중위생 안전과 인체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농업농촌, 위생 건강, 야생동물 보호 등 주관부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명부를 제정 공포하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치료 협력 및 통보 체계를 구축함.
  - 광견병은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가 심한 전염병으로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와 유행을 초래한 자는 법에 따라 중한 처분과 처벌을 함.
- (무해화 처리 강화) 병들어 죽은 동물, 병해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를 정의에 포함하고, 전문규범을 신설해 제도, 메커니즘, 보장 등 핵심 문제 해결에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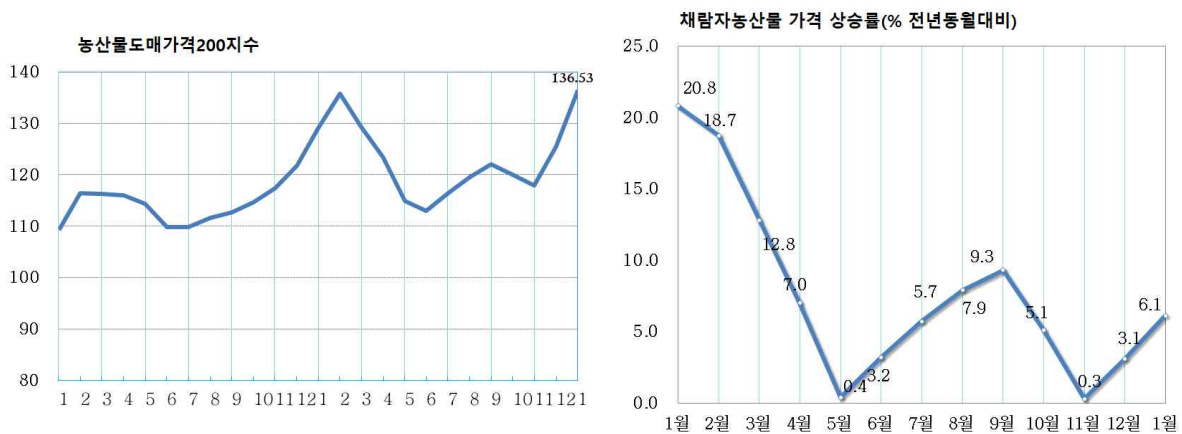
- △생산경영·운수 주체 책임 명확화, △ 역할 분담 명확화, △ 야생동물의 수집, 처리 명확화, △ 계획작성과 운영 주체 명확화, △ 보조, 보조기준, 방법 명확화
-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동물방역법에 대해 2008년 개정 이후 14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그동안의 변화된 엄중한 방역상황을 반영하고, 결함을 보완하여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한중간의 대외무역 및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동향 및 방역제도 조사 등이 중요한 실정임.
  -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의 병종이 다양하고 전염원이 복잡하여 질병별 전문 동향 파악이 필요함.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2018년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중국의 돼지 사육업 등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중국은 금번 동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 정화, 소멸, 무해화 처리 등을 추가하여, 동물 방역 관리 사슬을 완전히 보완, △ 방역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역량 강화, △ 공중위생 안전보장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 강화, △ 낙후된 기층 생산경영주체에 대한 방역 강화, △ 수의사 관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정비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격 동향

### ◆ 농산물 도매시장가격<sup>2)</sup>

- 2021년 1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36.53로 지난 12월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5% 지속 상승.
- 2021년 1월 채람자(菜篮子)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6.1%로 지난 12월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동월대비 14.7%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2)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 2021년 1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2월에 비해 식량,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축산물과 버섯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식량,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20년 9월~2021년 1월)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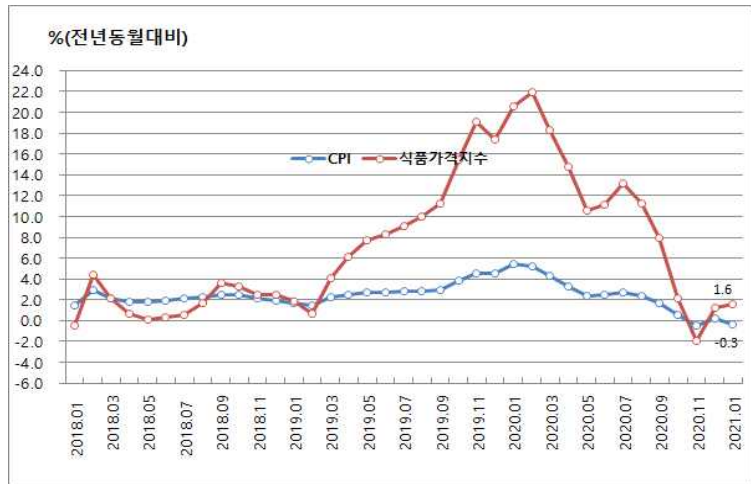
품목	2020년				2021년	1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010	16,901	16,879	17,078	17,379	1.76	4.79
	콩(1kg)	1,060	1,046	1,038	1,060	1,117	5.37	10.74
엽근채소	배추(10kg)	3,907	2,981	2,385	2,365	3,418	44.50	37.58
	무(18kg)	7,188	6,501	6,058	6,251	7,928	26.83	60.97
	양배추(8kg)	3,568	3,026	2,990	2,899	4,843	67.06	71.74
	당근(20kg)	9,473	8,553	8,254	8,287	9,897	19.42	35.85
	감자(20kg)	7,641	7,224	7,476	7,784	8,605	10.54	-0.27
양념채소	건고추(600g)	3,318	3,264	3,260	3,228	3,270	1.30	-2.53
	양파(kg)	316	353	384	441	537	21.79	3.60
	마늘(kg)	1,118	1,124	1,133	1,127	1,180	4.68	-23.33
	대파(kg)	631	685	773	1,166	1,653	41.77	250.42
과일	쪽파(kg)	1,110	1,009	1,054	1,428	2,098	46.99	108.70
	사과(부사, 15kg)	17,503	17,199	16,921	17,187	17,855	3.89	3.37
	배(풍수, 15kg)	10,554	10,606	11,163	12,104	13,391	10.64	33.30
	복숭아(kg)	928	947	891	852	857	0.57	-20.96
	포도(거봉, 5kg)	6,759	6,363	6,216	6,174	6,606	7.01	-1.85
	감귤(만다린, kg)	1,004	850	697	696	741	6.49	-0.74
과채	감(10kg)	7,762	6,576	5,936	5,922	6,870	16.01	-5.26
	딸기(2kg)	5,639	5,990	10,669	13,495	10,900	-19.23	27.78
	토마토(10kg)	7,105	7,973	7,323	7,616	7,516	-1.31	-31.43
	오이(kg)	648	639	631	736	775	5.29	-29.69
축산물	수박(kg)	515	595	687	971	983	1.19	28.13
	쇠고기(kg)	12,979	12,865	12,845	12,844	13,276	3.36	10.88
	돼지고기(kg)	8,192	7,259	6,711	7,282	7,948	9.14	1.76
버섯	닭고기(kg)	2,837	2,750	2,701	2,718	2,842	4.56	-9.72
	느타리버섯(2kg)	2,942	2,610	2,134	2,248	2,384	6.06	3.67
	새송이버섯(2kg)	2,341	2,317	2,199	2,228	2,418	8.54	-2.27
	팽이버섯(2kg)	2,213	2,096	1,959	2,308	2,503	8.44	-11.66
임산물	표고버섯(2kg)	4,073	3,959	3,836	3,838	3,945	2.78	-0.07
	밤(kg)	1,713	1,671	1,502	1,483	1,505	1.48	2.81
	대추(kg)	2,603	2,377	2,437	2,350	2,097	-10.79	-4.06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 ◆ 소비자물가

- 2021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 대비 1.0%로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3%로 하락.
- 이 중 식품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4.1%로 증가, 전년 동월의 1.6%로 증가.
- 1월 식품가격 상승(y-y)은 신선채소와 신식량이 주도 (각각 10.9%, 1.6%로 상승). 육류 가격만 하락.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1.1	'20.10	'20.11	'20.12	'21.1
소비자물가지수(CPI)	-0.3	-0.6	0.7	1.0	0.5	-0.5	0.2	-0.3
○ 식품·담배 및 주류	-1.2	-1.6	2.0	2.8	2.4	-0.7	1.4	1.4
식품	-1.8	-2.4	2.8	4.1	2.2	-2.0	1.2	1.6
- 식량	0.1	0.1	0.0	0.3	1.5	1.4	1.4	1.6
- 육류	-4.5	-4.7	4.3	3.7	2.0	-7.3	0.6	-0.4
- 조란(鸡蛋)	-1.9	-1.4	2.4	9.4	-16.3	-17.1	-10.8	1.2
- 수산물	-1.2	-1.9	0.8	3.3	2.5	1.0	1.7	0.2
- 신선채소	-2.1	-5.7	8.5	19.0	16.7	8.6	6.5	10.9
- 신선과일	1.8	0.0	3.5	2.3	0.4	3.6	6.5	1.3
○ 의류 및 복장	0.4	0.3	0.0	-0.4	-0.3	-0.3	-0.1	-0.2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0	0.1	0.2	-0.1	0.0	0.0	0.0
○ 의료보건	0.1	0.0	0.0	0.1	1.5	1.5	1.3	0.4
○ 교통 및 통신	-0.2	-0.3	0.9	0.9	-3.9	-3.9	-3.1	-4.6
○ 교육·문화 및 오락	0.6	-0.8	-0.1	0.4	1.1	1.0	0.9	0.0
○ 주택(거주)	0.1	0.0	0.1	0.1	-0.7	-0.6	-0.6	-0.4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7	-0.6	-0.4	0.5	2.4	2.5	2.2	-0.9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 무역 동향

##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20년 12월 농산물 수출액은 6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6.5%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20년 10월~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합계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44.3	58.0	95.6	599.7	64.8	3.2	17.6
02류	육과 식용실육	64.2	69.1	85.6	710.8	23.9	-8.7	-15.5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49.1	51.4	51.6	577	0.4	6.4	2.9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33.6	131.2	156.3	1,827.4	19.1	-12.3	-23.6
06류	산수목·꽃	38.4	42.6	55.9	472.6	31.2	9.4	9.3
07류	채소	853.6	994.3	971.9	9,671.7	-2.3	-5.4	-6.4
08류	과실·견과류	899.6	962.5	971.3	7,069.2	0.9	3.7	13.5
09류	커피·차·향신료	302.5	322.5	368.5	4,035.5	14.3	6.4	10.9
10류	곡물	76.3	49.8	69.3	960	39.2	-29.1	-14.4
11류	제분공업제품	50.9	49.0	50.6	692.4	3.3	-36.5	-17.4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27.5	364.4	342.3	2,875.3	-6.1	-2.1	0.0
13류	식물성엑스	119.1	135.	144.9	1,636.5	7.3	-2.0	5.2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1.0	17.5	19.5	157.1	11.4	21.1	21.0
15류	동식물성유지	116.3	125.2	103.8	1,439.3	-17.1	-2.8	21.0
16류	육·어류조제품	779.3	981	934.6	9,165.7	-4.7	7.6	-0.8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39.0	161.1	161.6	1,702.9	0.3	-4.3	-8.5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35.3	35.4	44.2	327.4	24.9	-6.6	-18.0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61.8	172.4	185.8	2,010.3	7.8	-9.1	-9.3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634.2	688.5	629.6	7,623.3	-8.6	-19.8	-2.7
21류	기타 조제식품	394.2	391.5	367.1	4,562.7	-6.2	-10.7	14.8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17.1	164.7	151.5	1,972.6	-8.0	-28.9	-5.7
23류	조제사료	212.4	246.3	275.3	2,919.2	11.8	6.0	3.9
24류	담배	49.5	66.6	98.3	778.8	47.6	-59.4	-45.1
합 계		5,509.2	6,280.0	6,335.1	63,787.4	0.9	-6.5	-1.1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 2020년 12월 농산물 수입액은 15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7%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20년 10월~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합계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60.4	54.7	58.1	634.8	6.2	42.4	27.6
02류	육과 식용설육	2,147.6	2306.3	2,974.6	30,272.0	29.0	19.8	60.7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560.4	643.5	672.6	7,288.7	4.5	13.3	14.8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54.4	69.0	68.8	763.7	-0.3	1.0	-10.7
06류	산수목·꽃	17.8	27.2	25.0	243.8	-8.1	66.7	-9.6
07류	채소	175.8	205.0	157.8	1,956.6	-23.0	101.3	24.9
08류	과실·견과류	674.9	808.4	1,222.9	12,016.0	51.3	11.2	3.0
09류	커피·차·향신료	99.0	126.3	154.3	1,237.8	22.2	122.0	30.1
10류	곡물	920.8	1,006.8	1,516.6	9,324.5	50.6	166.2	84.4
11류	제분공업제품	111.4	121.6	166.6	1,439.8	37.0	20.8	8.9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839.7	4400.0	3,788.6	44,963.0	-13.9	-11.4	12.2
13류	식물성엑스	32.1	27.4	28.6	370.8	4.4	-21.2	-10.1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1.0	11.9	12.5	129.1	5.0	21.4	-10.2
15류	동식물성유지	963.4	1063.1	1,471.6	11,254.0	38.4	55.2	13.3
16류	육·어류조제품	32.3	44.2	40.4	352.7	-8.6	-23.5	-10.7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385.2	318.5	389.9	2,636.5	22.4	223.8	64.3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05.9	101.9	102.1	775.6	0.2	25.1	-4.4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567.1	645.2	661.9	7,330.6	2.6	20.6	1.7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03.3	160.9	181.9	1,343.9	13.1	0.7	-10.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407.7	355.1	371.9	4,468.2	4.7	21.9	21.2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529.0	495.7	557.7	5,090.0	12.5	4.8	-12.5
23류	조제사료	443.6	441.6	335.2	4,798.1	-24.1	16.8	20.8
24류	담배	42.1	41.0	88.1	1,166.5	114.9	-13.7	-38.8
합 계		12,284.9	13,475.3	15,047.7	149,856.6	11.7	19.1	20.1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 ◆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20년 12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113.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50.0% 감소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109.2천 톤으로 3대 곡물 수출량의 96.6%를 차지. 쌀 수출량 전월에 비해 10.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8.7% 감소. 밀은 3.5천 톤을 수출.
  - 12월 한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40.0천 톤으로 1위 차지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20년 10월~12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48.2	0.0	0.0	40.0	205.6	-	21.2	38.7
	북한	161.6	0.0	0.0	0.0	1.3	-	-100.0	-99.2
	일본	25.6	0.0	1.5	0.1	63.3	-93.3	-64.3	147.6
	홍콩	22.1	1.5	0.5	1.7	18.6	261.5	-12.5	-15.9
	몽골	39.9	3.8	4.9	5.5	46.7	13.6	-0.3	17.3
	기타	2,350.3	217.3	91.8	61.9	1,968.9	-32.5	-62.1	-16.2
	합 계	2,747.6	222.7	98.6	109.2	2,304.5	10.8	-48.7	-16.1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161.6	0.0	0.0	0.0	1.3	-	-100.0	-99.2
	일본	24.8	0.0	0.3	0.1	61.3	-61.5	-44.4	147.4
	몽골	39.9	3.8	4.9	5.5	46.8	13.6	-0.3	17.4
	한국	3.0	0.0	0.0	0.0	0.0	-	-	-99.3
	홍콩	22.0	1.5	1.5	1.7	19.6	10.8	-12.2	-11.1
	기타	2,297.1	215.9	1960.3	5665.0	9,369.7	189.0	3,414.5	307.9
	합 계	2,548.4	221.3	95.4	66.6	2,021.5	-30.2	-62.5	-20.7
밀	합 계	50.6	2.4	4.0	3.5	32.0	-11.7	-32.0	-36.9
옥수수	북한	22.9	0.0	0.0	0.0	1.2	-	-100.0	-94.6
	미국	-	0.0	0.0	0.0	0.0	-	-	-
	캐나다	1.1	0.0	0.0	0.0	0.0	-	-	-100.0
	기타	1.7	0.0	0.3	0.3	1.3	1.8	-33.3	-23.4
	합 계	25.7	0.0	0.3	0.3	2.5	1.8	-95.8	-90.2
대두	한국	44.7	1.3	9.5	2.7	38.6	-71.5	-48.6	-13.5
	일본	24.7	1.0	1.5	1.9	23.0	24.7	45.3	-6.9
	미국	0.6	0.0	0.0	0.1	1.7	23.4	-28.4	191.4
	기타	44.5	0.7	1.4	0.9	16.2	-33.7	-72.7	-63.7
	합	114.5	3.1	12.5	5.6	79.5	-55.1	-44.0	-30.5

자료: [www.gtis.com/gta/](http://www.gtis.com/gta/)

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20년 10월~12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1~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526.7	12.9	40.0	92.5	324.6	131.3	39.5	-38.4
	베트남	479.1	46.0	91.9	88.8	787.3	-3.4	168.6	64.3
	파키스탄	603.6	10.5	85.3	190.0	474.8	122.7	62.6	-21.3
	기타	894.3	89.9	165.3	341.4	1,324.7	106.5	119.0	48.1
	합 계	2,503.7	159.3	382.6	712.7	2,911.5	86.3	91.5	16.3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319.9	3.7	23.8	71.0	225.9	198.5	7.2	-29.4
	베트남	353.6	17.5	34.1	19.3	384.3	-43.5	-41.8	8.7
	파키스탄	445.7	4.1	61.5	157.0	314.3	155.2	34.4	-29.5
	기타	861.6	53.2	122.2	253.9	961.0	107.8	62.8	11.5
	합 계	1,980.7	78.4	241.6	501.2	1,885.6	107.5	34.7	-4.8
밀	러시아	36.5	0.0	0.2	0.3	3.2	68.0	-83.2	-91.3
	호주	0.2	0.0	0.0	0.0	0.3	-	-	35.5
	캐나다	2.4	0.3	0.0	0.1	3.0	-	-70.4	27.4
	기타	3.7	0.3	1.0	3.8	6.9	299.4	154.9	87.8
	합 계	42.8	0.6	1.2	4.2	13.4	266.9	11.4	-68.7
보리	호주	2,315.7	33.0	1.3	0.0	1,457.1	-100.0	-100.0	-37.1
	캐나다	1,459.5	175.9	298.6	355.3	1,907.3	19.0	114.1	30.7
	우크라이나	873.9	0.0	0.0	0.0	0.0	-	-	-
	프랑스	1,183.0	355.5	212.4	112.7	1,758.7	-46.9	67.0	48.7
	기타	96.6	100.8	113.4	186.8	753.1	64.7	2,891.8	679.2
합 계	5,928.8	1,341.8	1,113.1	982.0	8,079.5	-11.8	309.8	36.3	
옥수수	미국	317.7	1,016.9	762.0	1,056.7	4,341.9	38.7	1,665.4	1266.9
	라오스	141.7	0.0	0.0	0.0	0.0	-	-	-
	불가리아	4.4	49.2	100.1	0.0	261.5	-100.0	-100.0	5797.1
	우크라이나	4,137.7	39.5	248.3	1,073.9	6,297.6	332.5	90.5	52.2
	미얀마	116.4	17.7	62.4	37.8	121.2	-39.3	247.0	4.1
	기타	73.2	12.0	120.7	350.1	579.5	190.0	1,495.2	90.3
합 계	4,791.1	1,141.5	1,226.0	2,254.2	11,294.2	83.9	207.1	135.7	
대두	미국	17,014.6	3,399.5	6,041.0	5,836.2	25,888.5	-3.4	88.7	52.2
	캐나다	2,265.4	14.7	8.4	85.4	245.3	921.1	447.4	-89.2
	브라질	57,676.5	4,233.1	2,743.1	1,177.1	64,277.0	-57.1	-75.6	11.4
	아르헨티나	8,791.6	813.0	497.0	131.4	7,455.8	-73.6	-89.9	-15.2
	기타	2,837.7	228.0	297.0	293.6	2,460.9	-1.2	-1.1	-13.3
	합 계	88,585.9	8,688.4	9,586.5	7,523.7	100,327.4	-21.5	-21.2	13.3

자료: www.gtis.com/gta/

- 2020년 12월 대두 수출량은 5.6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55.1%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4.0% 감소
- 2020년 12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3,953.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5.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92.9%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가 2,254.2천 톤(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리가 982.0천 톤(24.8%), 쌀이 712.7천 톤(18.0%) 순
- 2020년 12월 최대 수입 곡물인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8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07.1% 증가
- 2020년 12월 보리 전월에 비해 11.8%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09.8%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sup>3)</sup> 2020년 12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86.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91.5% 증가
  - 12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501.2천 톤으로 70.3%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26.7%, 태국 13.0%, 베트남 12.5% 순
- 2020년 12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266.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1.4%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8.0%로 비중 차지
- 2020년 12월 대두 수입량은 7,523.7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1.5% 감소, 지난해 동기 비해서는 13.3%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77.6%, 브라질 15.6%, 아르헨티나 1.7%, 캐나다 1.1% → CR<sub>3</sub> 96.1%

3)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21년 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8% 증가
  -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44.5%), 채소(22.2%), 식량(16.5%), 특용잡사(10.0%), 축산물(2.8%)
  - 상위 10개 수출품목: 메현미(13.8%), 전분박 및 유사한 박류(5.7%),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4.3%), 김치(4.0%), 당면(2.4%), 개사료(2.3%), 채소류 조제품(2.2%),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2.1%),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조분(2.1%), 맥주(1.7%) → CR<sub>10</sub> 41.5%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20년 12월~2021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20년 12월~2021년 1월			1월 증감률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0년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7,850	43,420	182,483	55.9	52.3	52.3
		서류	678	628	7,479	-7.4	-3.4	-3.4
		두류	25,926	3,757	109,134	-85.5	-44.0	-44.0
		전분	4,151	1,170	28,380	-71.8	-22.2	-22.2
		계	58,606	48,974	327,476	-16.4	31.0	31.0
	채소	69,501	65,908	705,033	-5.2	0.3	0.3	
	과실	6,112	6,200	71,060	1.4	-10.4	-10.4	
	화훼	2,477	2,438	25,826	-1.6	-21.9	-21.9	
	버섯	4,519	3,453	34,774	-23.6	35.4	35.4	
	특 용 · 잡 사	채유종실	32,783	18,049	202,926	-44.9	57.0	57.0
		차류	560	338	5,919	-39.8	-46.0	-46.0
		연초류	381	372	7,260	-2.3	-36.2	-36.2
		인삼류	1,207	1,146	5,745	-5.0	994.9	994.9
		한약재	8,595	9,530	75,718	10.9	-2.9	-2.9
		잡사류	752	347	7,922	-53.9	-81.3	-81.3
		계	44,277	29,782	305,490	-32.7	21.7	21.7
농산가공품	136,459	132,386	1,438,499	-3.0	0.3	0.3		
소 계	321,950	289,142	2,908,158	-10.2	6.2	6.2		
축 산 물	산동물	966	948	8,566	-1.9	50.5	50.5	
	육류	3,643	3,126	41,548	-14.2	-32.2	-32.2	
	난류	359	252	2,967	-29.8	10.2	10.2	
	낙농품	16	26	152	61.3	-41.8	-41.8	
	기타 축산물	4,019	3,631	44,667	-9.7	8.6	8.6	
	소 계	9,003	8,210	97,901	-8.8	-7.3	-7.3	
합 계	330,953	297,351	3,006,058	-10.2	5.8	5.8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 2021년 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9.2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12.0%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47.4% 증가

-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59.3%), 축산물(11.8%), 특용잠사(13.3%), 과일(11.8%)
- 상위 10개 수입 품목: 라면(12.1%), 조제품기타(7.6%), 조제분유(7.2%), 자당(5.8%),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4.8%),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4.0%), 홍삼(3.7%), 과일주스 음료(2.9%), 포도(2.3%),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2.2%) → CR<sub>10</sub> 52.6%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20년 12월~2021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20년 12월~2021년 1월			1월 증감률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0년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산물	식량	곡류	263	307	2,764	16.5	114.8	114.8
		서류	585	176	1,239	-69.9	3648.9	3648.9
		두류	3	1	210	-50.0	-90.7	-90.7
		전분	0	0	51	-	-99.6	-99.6
		계	851	484	4,265	-43.1	163.5	163.5
	채소	2,721	365	16,852	-86.6	10.0	10.0	
	과실	12,358	10,675	96,666	-13.6	9.6	9.6	
	화훼	311	23	822	-92.5	23.2	23.2	
	버섯	19	15	64	-22.4	-	-	
	특용·잠사	채유종실	0	1,142	95	-	-	-
		차류	114	6	390	-95.0	-48.6	-48.6
		연초류	1,743	320	18,883	-81.7	-	-
		인삼류	12,022	6,818	82,012	-43.3	136.5	136.5
		한약재	7	59	658	735.2	-57.7	-57.7
		잠사류	0	0	98	-	-	-
		계	13,886	8,345	102,136	-39.9	175.1	175.1
	농산가공품	62,035	61,461	732,579	-0.9	44.6	44.6	
소 계	92,180	81,370	953,384	-11.7	45.8	45.8		
축산물	산동물	17	8	58	-52.9	3900.0	3900.0	
	육류	60	173	1,459	188.3	23.9	23.9	
	난류	0	0	0	-	-	-	
	낙농품	9,946	8,060	85,171	-19.0	59.3	59.3	
	기타 축산물	2,342	2,342	27,964	0	72.0	72.0	
	소 계	12,364	10,583	114,652	-14.4	61.3	61.3	
합 계	104,544	91,953	1,068,035	-12.0	47.4	47.4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9 2021년 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메현미	42,278.9	13.8	라면	11,164.9	12.1
2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17,441.2	5.7	조제품 기타	6,943.4	7.6
3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3,306.5	4.3	조제분유	6,627.6	7.2
4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2,220.4	4.0	자당	5,325.5	5.8
5	당면	7,333.7	2.4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4,408.0	4.8
6	개사료	6,978.1	2.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3,706.4	4.0
7	채소류 조제품(06호의 물품 제외)	6,825.0	2.2	홍삼(기타/본삼)	3,369.3	3.7
8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6,492.8	2.1	과실주스 음료	2,648.7	2.9
9	채유종자와 과실의 분, 조분	6,453.0	2.1	포도(신선)	2,148.6	2.3
10	맥주	5,160.1	1.7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2,050.0	2.2
11	땅콩	4,890.4	1.6	프로필렌글리콜	2,011.9	2.2
12	캔디류	4,764.9	1.6	과실주스 주기제것(혼합)	1,981.1	2.2
13	식물성액즙과엑스	4,343.4	1.4	곡류 조제품	1,600.2	1.7
14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4,333.8	1.4	유자(기타방법 조제)	1,588.2	1.7
15	냉동채소	4,239.3	1.4	아미노산(기타)	1,546.0	1.7
16	마늘(냉동)	3,879.1	1.3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1,424.3	1.5
17	대두박	3,684.1	1.2	인삼음료	1,420.0	1.5
18	들깨	3,543.5	1.2	견과류 조제품	1,344.1	1.5
19	아조디카본아미드	3,404.6	1.1	참깨	1,142.3	1.2
20	아미노산(기타)	3,235.8	1.1	베이커리 제품	1,119.4	1.2
21	전화당, 그 밖의 당류 당시럽 혼합물	2,930.1	1.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1,036.2	1.1
22	당근(신선, 냉장)	2,892.6	0.9	홍삼액즙,홍삼엑스	1,024.9	1.1
23	조제품 기타	2,677.2	0.9	밀크, 크림	962.8	1.0
24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2,546.2	0.8	캔디류	927.7	1.0
25	스테비오사이드	2,477.0	0.8	고추장	897.5	1.0
26	버섯의 종균	2,373.4	0.8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875.9	1.0
27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2,274.1	0.7	락트산의 에스테르	732.9	0.8
28	젤라틴	1,924.6	0.6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713.8	0.8
29	기타채소(건조)	1,818.0	0.6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689.0	0.7
30	시트르산	1,804.5	0.6	스위트 비스킷	606.8	0.7
31	식물성 점질물	1,783.3	0.6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591.0	0.6
32	양파(신선, 냉장)	1,764.6	0.6	물(설탕,감미료,향미 첨가/착색한 것)	590.9	0.6
33	조제식료품 기타	1,749.9	0.6	글리세롤(조상의 것)	567.1	0.6
34	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주정	1,672.3	0.5	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	560.0	0.6
35	고량주	1,648.2	0.5	인스탄트커피	537.3	0.6
	합 계	197,144.6	64.4	합 계	74,883.7	81.2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